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25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용만 · 유동수 · 이인영  
강준현 · 박용갑 · 이강일  
조승래 · 이정문 · 정혜경  
김영진 · 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한 것은 관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해임 건의 의결이 있음에도 관장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사회 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회의참여 제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 의 안건이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가 의결로써 관장의 해임 건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7항 신설 등).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득이한”을 “제11조의3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거나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해임 요청) 이사회는 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관장의 직무정지) 대통령은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경우로서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 결정 전까지 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p> <p>② 관장이 <u>부득이한 사유로</u>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1조(이사회) ① ~ ⑥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9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1조의3에 따라</u> 직무가 정지되거나 <u>부득이한</u>-----</p> <p>-----</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u>제11조의2(해임 요청) 이사회는 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u></p>

<신 설>

게 그 관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관장의 직무정지) 대통령은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관장의 해임을 건의한 경우로서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여부 결정 전까지 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